

第17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2005.2.21. ~ 2.23.)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7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개회식 .....	159
II. 제17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161
III. 제17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167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	173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	175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79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	185
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89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2월 21일 (월요일) 11시 00분

## 開會式順(第176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0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 의사담당 김영구

지금부터 제17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11시 02분 폐회)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2월 21일 (월요일) 11시 02분

## 議事日程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7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7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특별휴가중으로, 김전원 교육국장님

은 지방교육행정 혁신을 위한 교육혁신지도자 과정 특별연수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경과보고

(11시 03분)

[제176회-제1차 본회의]

● 의장 고규강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박경석

의사과장 박경석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2월 1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요구와 동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2월 11일 공고 제2005-2호로 제17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고규강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기결정의견

(11시 05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2월 22일은 소위원회 활동을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2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2. 제176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

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

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5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전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고규강 의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던 당직수당 책정 방법이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고, 타 시·도 교육청 및 일반행정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현실화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당직수당 지급 단가를 1인 1회당 3만원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학교회계 제도의 시행 및 관련 법규의 개정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학교회계 제도의 시행에 따라 학교회계 소관 물품을 동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있어 서무주무자의 명칭을 행정주

[제176회-제1차 본회의]

무자로 하고, 주요 물품의 범위 단가를 50만원 이상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으로 하였으며, 불용물품의 소요 조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 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11시 10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2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기수 위원님과 김남훈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하고자 합니다.

제17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3명

부교육감 김용호,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이승업, 중등교육과장 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2월 23일 (수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5분 자유발언(진옥경 위원)

(11시 00분 개의)

###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김전원 교육국장께서는 지방교육행정 혁신을 위한 교육혁신 지도자 과정 특별연수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

[제176회-제2차 본회의]

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성영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성영용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2월 11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에 거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일·속직수당 책정 방법을 시·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됨에 따라 당직수당을 1인 1회에 3만원으로 하여 타 시·도교육청 및 일반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으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타 시·도처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포함시켜 개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별첨 4)  
(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교회계 제도의 시행에 따라 일부 개정조례안 제1조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을 교육비특별회계 및 공립의 각급 학교



학교회계 소관 물품으로 개정하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의 조문 내용에 포함된 용어상 직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주무자를 업무주무자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중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 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으로 하여 중요물품의 변동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불용품의 소요 조회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또는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문서로 행정 업무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 및 내용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문만을 수정의결 하였고,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5)  
(끝에 실음)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돌아감)

●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침묵)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침묵)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

[제176회-제2차 본회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위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질서를 위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등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원 발언대로 나눔)

● 진옥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진옥경입니다.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교육 구성원들의 요구를 접하면서 역량 부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처리시한 일정이 임박해 옴에 따라 지난 200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제기한 바 있는 양백상고 구제 요청 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청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재차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대농의 산업체 부설학교인 양

백상고는 회사의 부도로 오는 2006년 6월 폐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에 대한 공립학교 특별채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 많은 의혹과 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고규강 의장이 부교육감 면접한 결과 현재 교육청의 입장은 본 위원이 처음 문제 제기하였던 작년 8월과 별반 다르지 않게 회사측 책임만 되뇌이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당초 양백상고 측에서 특별채용 요청한 과목이 교육청 공문시행 후 변경되는 바람에 주경야독하는 학생을 지도하여 전국 규모의 과학전람회에서도 수상하는 등 유능하고 열정적인 교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퇴 대상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주식회사 대농의 인수 업체인 주식회사 신영은 회사로 진출되고 있는 구제 요청 교사에 대해 고용승계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교육청, 학교, 회사 간의 상호 책임전가 중에 한 교사의 꿈이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백상고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기에 남아 있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사채용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특별채용으로 인해 파행적인 수업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 한대도 학교를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도교육청이 뒷짐만 지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학교 인사권자의 책임을 묻고 구성원들의 피해와 억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강구하는 도교육청의 태도 변

화를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2월 23일

(진옥경 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 의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7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폐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김용호,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이승업,  
중등교육과장 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4)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5)



(별첨 1)

## 議 事 日 程 (案)

第176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5. 2. 21. ~ 2. 23.(3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2월 21일(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1. 제17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5. 2. 21. ~ 2. 23.(3일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제안설명 “
2월 22일(화)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본회의 휴 회
2월 23일(수) (11:00)	[ 제2차 본회의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 116 - / 호
의결 연월일	200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5년 2월 // 일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196 ~ 1
----------	---------

제출연월일 : 2005. 7.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던 당직수당 책정방법이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고, 타·시도 교육청 및 일반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지급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0,000원으로 함.(안 제3조)
- 나. 당직수당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충청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공립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시기) 당직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첨 3)

의안번호	제 116 ~ 2호
의결 연월일	200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5년 2월 11일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6 ~ 2
----------	---------

제출연월일 : 2005. 7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학교회계제도의 시행과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학교회계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립의 각급학교 학교회계 소관물품을 추가함.(안 제1조)
- 나.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있어 서무주무자를 행정주무자로 함.(안 제8조, 제9조)
- 다.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으로 함.(안 제11조)
- 라.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제4항)

### 개정조례안 : 불임

### 참고사항

- 신·구문 대비표 : 불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불임
- 입법예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비특별회계 소관물품”을 “교육비특별회계 및 공립의 각급학교 학교회계 소관물품”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중 “서무주무자”를 각각 “행정주무자”로 한다.

제11조중 “물품당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또는 충청북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1조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u>교육비특별회계 소관물품</u>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            ----- <u>교육비특별회계 및 공립의 각급 학교 학교회계 소관물품</u> -----            -----            -----</p>
<p>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주관과장이 없는 청·소는 <u>서무주무자</u>)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p>	<p>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            ----- 행정  <u>주무자</u>)-----            -----            -----</p>
<p>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주관과장이 없는 청·소는 <u>서무주무자</u>)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3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 행정  <u>주무자</u>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p>제11조(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u>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u>으로 한다.</p> <p>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③(생략)</p> <p>&lt;신설&gt;</p>	<p>제11조(중요물품의 범위) ----- ----- -- <u>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u> -----</p> <p>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③(현행과 같음)</p> <p>④<u>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또는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u></p>

## 관계법령발췌서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제30조2 (학교회계의 설치) ①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 지방재정법 (법률 제7159호 2004. 1. 29)

제104조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요물품에 대하여 직전 회계연도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제6조 (교육·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본다.

제130조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 ①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한다.

②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서식과 작성방법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별첨 4)

(제176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5. 2. 2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5년 2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5년 2월 21일,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2월 21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2월 22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총무과장 이상기)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던 당직수당 책정 방법이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고, 타· 시도 교육청 및 일반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0,000원으로 함(안 제3조)
- 당직수당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하도록 함. (안 제4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5. 심사보고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일·숙직수당 책정방법을 시·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0,000원으로 하여 타·시도 교육청 및 일반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타·시도처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포함 시켜 개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5. 2. 22.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성영용

성영용

간사

진옥경

진옥경

위원

김남훈

김남훈

송대현

송대현

이기수

이기수

이상일

이상일

(별첨 5)

(제176회 임시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5. 2. 2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5년 2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5년 2월 21일,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2월 21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2월 22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가. 제안이유

- 학교회계제도의 시행과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학교회계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립의 각급학교 학교회계 소관물품을 추가함 (안 제1조)
-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있어 서무주무자를 행정주무자로 함. (안 제8조, 제9조)
-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 당 단가 50만원 이상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으로 함. (안 제11조)
-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16조 제4항)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 학교회계 제도의 시행에 따라 일부개정 조례 안 제1조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을 “교육비특별회계 및 공립의 각급 학교 학교회계 소관물품”으로 개정하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8조와 제9조의 조문 내용에 포함된 용어상 직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주무자”를 “업무주무자”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 안 제11조 중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 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을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으로 하여 중요물품의 변동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16조 “불용품의 소요 조회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또는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 문서로 행정업무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 및 내용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문만을 수정의결 하였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5. 2. 22.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성영용

成永龍

간사

진옥경

진옥경

위원

김남훈

김남훈

송대현

송대현

이기수

이기수

이상일

李相一



第17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제17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97

II. 제17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201

## I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241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2월 21일 (월요일) 11시 18분

## 議事日程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18분 개회)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출의건

###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76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성영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성영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성영용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오셔서 주관하시죠.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성영용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이번 조례심사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시 20분)

● 위원장 성영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진옥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성영용

진옥경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진옥경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진옥경

심도있고 적절한 조례심사가 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1분)

● 위원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 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오후하든지 한 30분 당겨서 하기는 어렵습니까?

● 의사담당 김영구

공고가 났기 때문에.....

● 이기수 위원

어디 어디서 공고가 났어요?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애기지, 여기서 논의하면 되는 거지.

● 위원장 성영용

시간 변화는 가능하잖아요.

● 이기수 위원

오후에 해도 괜찮을 것 아닙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고 위원장님도 제천시 오신다든지 하면 12시에 점심 잡수고서 1시에 한다든지 2시에 한다든지 그렇게, 조례일정은 여기서 결정하는 애기지 위원들 형편이라든지.....

● 위원장 성영용

어떻게 시간은 변경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의사일정에 대한 찬동여부부터 말씀해 주시고 시간은 별도로 정해서 넘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의사일정은 내일 하되 시간문제는 여기서 협의해 갖고서 위원들 형편해 갖고서

로.....

● 위원장 성영용

현재는 소위원회활동을 위한 이의관계를 여쭙보는 거니까 이거부터 가결하시고 시간관계는 그 다음에 정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죠.

● 이기수 위원

여기서 아주 발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성영용

우선 이틀부터 결정을 하고

● 김남훈 위원

원안대로 하고 시간만 되면

● 위원장 성영용

조례안 심사에 관한 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금 이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 이기수 위원

내일 오후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성영용

오후 몇 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 이기수 위원

[제176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 편하신 대로

● 위원장 성영용

제의를 하셨으니까 시간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이기수 위원

1시 반정도

● 위원장 성영용

1시 반에 대해서 의견 제안이 있었습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진옥경

여기 불참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내일은 참석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 간사 진옥경

시간변동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 위원장 성영용

제가 통보를 드리면 되니까요.

그러면 내일 의사일정은 11시에서 1시 반으로 변경되어서 1시 반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월 22일 1시 반에 제2차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등 2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진옥경,  
위 원 김남훈, 송대현, 이기수.

0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 부 록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2월 22일 (화요일) 13시 32분

## 議事日程 (제176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 32분 개회)

### ● 위원장 성영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상정된 안건별로 주관과장 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질 의와 관계관의 답변을 들으신 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 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 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 ● 위원장 성영용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총 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하여 지금까지 지급하던 당직수당 책정방법이 교육인적 자원부의 지침에 의하여 자치단체별로 지급단가로 시·도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또한 타 시·도교육청 및 일반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 본 당직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당직수당 지급단가를 현행 만원에서 1인 1회당 3만원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직비는 당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성영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의 신청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간사 진옥경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 위원장 성영용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간사 진옥경

본 조례안은 2004년도 8월에 저희 교육위원회에 상정이 됐고 회의록을 보니까 부결이 되어서 다시 오늘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다시 올라오게 된 경위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지난 자치단체 그러니까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당직비 인상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3만원으로.

그런데 우리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서는 그대로 만원을 시행하니까 각 기관별로 형평성이 안맞고 또 당직비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작년에 지침으로 각 시·도자치단체 교육청별로 조례로 정해서 인상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 8월에 당직비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때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청 간에 의회 쪽에서는 복무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었고, 또 그후에 교육부에서 조례가 왔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제정해야한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또한 저희들은 일반 자치단체하고 틀려 가지고 국가공무원인 교사, 교원이 있고 지방공무원

인 행정직이 있어서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또 조례의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아본 결과 조례로 정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올렸었는데, 그때 의회 쪽에서는 지방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파악을 해 보면 저희들이 충북에서 제일 먼저 조례로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후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연말에 11월 또 대개 연말에 가 가지고서 제정을 했죠.

제정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각 시·도교육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충북교육청만 빼 놓고 나머지는 다 1월 1일부터 당직비가 3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현재 도청에서도 3만원이 지급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충청북도 내에서 각 기관간에 당직비가 현실화되지 않고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한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냥 이 조례로 제정해야 국가직과 지방직을 다 아울러서 포용하고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요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

희들이 법리는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요번에 상정을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진옥경**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급단가 현황이 지금 위원들한테 배부가 됐는데 다른 데는 지금 액수도 3만원 이상이네요. 서울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인데

● **총무과장 이상기**

거기만 3만 5,000원입니다.

● **간사 진옥경**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부 이와 같은 당직수당지급조례안이 11월경에 그러니까 통과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 **간사 진옥경**

동일한가요?

● **총무과장 이상기**

거의 비슷비슷하게 금년 1월에 통과된 시·도도 있고 주로 작년 연말에 거의 통과가 됐습니다.

● **간사 진옥경**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예.

● **간사 진옥경**

그러면 작년 8월에 지금 현 교육위원회

의장 주도로 이것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국가공무원에 관련한 당직은 별도로 규정해야 된다고 거의 단독적으로 이것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부결을 뭐랄까 권유를 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겠네요.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그것은 서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보기에 어렵고 그 후에 조례로 정하도록 된 지침이 됐기 때문에.....

● 간사 진옥경

지침은 5월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우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무슨 하등의 변동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 총무과장 이상기

그거는 서로 위원님들과 집행청 간의 서로 견해가 법률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잘못됐다라기 보다는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서로 조금 아주 급하지 않으니까 뒤로 미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 차이지 저희들이 의회 쪽에 잘못됐다 안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간사 진옥경

회의록을 보면은 169회 회의록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견해 차이가 아니라 위원들과 집행청이 법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부와 무슨 이름을 거명하면서 주사와 그리고 3차례 걸쳐 전화를 했다, 논의를 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부결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다시 이것이 올라오게 된 것은 어쨌든 의회로써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동일한 내용의 안을 우리가 타 시·도가 전부 통과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웅

답변은 충분히 되셨습니까? 진옥경 위원님.

● 간사 진옥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다음 송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송대헌 위원입니다.

지금 진위원이 심히 부끄럽다는 말씀까지 표현이 되는데 하나 확인할게 있어요.

타 시·도에서 한 것이 당직수당조례로 올라온 것이 다 아닌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당직수당으로 다른 데는 다 되고 우리도  
만 안돼서 우리가 이렇게 법리를 몰라 가  
지고 부끄럽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 같  
은데 쟁점이 이렇습니다.

먼저 번에 논의됐던 것이 글자하나 안  
고치고 다시 올라오는 자체를 어떤 명분  
이 있어야 통과시켜주겠는데 3만원 되는  
그 자체는 공감합니다. 또 교육부에서 조  
례로 하라고 했으니까 조례로 하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조례로 하되 자율적으로 먼저 번에 현  
의장이죠. 고의장이 했을 때는 복무조례  
속에 집어넣는 안 복무조례 속에 넣어서  
이걸 3만원으로 해 주는 안을 검토하는  
게 어떠냐, 또 하나는 예산의 편성지침  
속에 편성해 넣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  
리가 의회의결 시켜서 지급하면 어떠냐,  
이런 것이 되어서 결국 지난번에 통과를  
못하고 부결시켜 놔던 거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 전부 했다는 것  
은 여기 올라온 것처럼 교육부에서도 당  
직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꽂아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무엇인가를 합  
리적으로 조례를 만들라는 것이지, 복무  
조례에 합당하다면 복무조례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먼저 번 우리가 제기 했던 대  
로, 또 예산편성지침에 가능하다면 조례  
를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가 어떻게  
교육부가 어떠니까 따르라는 문제가 아닙

니다. 조례는 우리 위원들이 정하는 문제  
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부분이  
법리도 모르고 전에 했던 부분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하나 짚어  
놓고 회의록에요.

이상하게 진위원 입에서 지난번에 여기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법리도 모르고 부  
결시켜 놓고.....

● 간사 진옥경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규강 위  
원 주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송대헌 위원

지금 타 시·도에서 한 것이 전부  
다.....

● 간사 진옥경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송대헌 위원

잘못 답변한 거죠.

타 시·도 전부 다 당직수당으로 고쳤  
습니까?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국의, 정  
확하게 얘기하세요.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타 시·도는 복무조례에다가 당직수당  
으로 정해놨습니다, 당직수당으로.

● 송대헌 위원

당직수당이 복무조례 속에 들어가 있  
죠?

● 총무과장 이상기

예.

● 송대현 위원

맞잡아요. 복무조례 속에 당직수당으로 들어가 있다고

● 총무과장 이상기

당직 및 비상근무 이렇게.....

● 송대현 위원

지난번에 고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무조례 속에 넣었다고요. 다른 타 시·도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안된다 이게 예요. 국가직이 뭐가 있어서 안되니까 지금 당직조례라는 걸 다시 만들자는 거예요. 핵심은.

● 간사 진옥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제가 여기 회의록을 여러 차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고규강 위원님 쟁점으로 말씀하신 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넣고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안이 다시 올라온 것은 집행청에서의 어떤 고려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그것이 어떤 경위에서 이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똑같은 안이 올라왔는지 질의 드린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이 충분치는 않았지만은 어쨌거나 경위를 제가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기 지금 당직수당이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 송대현 위원

아니 복무조례로 전국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 간사 진옥경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이고 충청북도는 왜 이렇게 이런 식의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송대현 위원

글쎄 그 설명을 해야되지

● 간사 진옥경

지금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 송대현 위원

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돼요.

● 총무과장 이상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아까도 진위원님이 질문하신 경위하고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복무조례 속에 지방공무원 그 제목이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속에는 우리 일반직만 복무조례가 적용하

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교원은 국가직이라서 별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복무규정을 한 줄만 고치면 개정만 하면 편리하겠습니다 마는 어차피 우리가 새로 당직규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할 경우에는 국가직과 지방공무원이 혼합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같이 포용할 수 있는 조례 즉 별도로 당직수당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복무조례로 당직수당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을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대개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매년 교육감이 당직수당을 얼마를 주겠다는 것을 또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정했을 때는 똑같이 국가직과 지방직을 아우를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당직비를 명확하게 1인 1회당 3만원으로 규정을 해서 이걸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약간 애매모호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아울러 포함할 수 있다는 점.

● 간사 진옥경

그러면 제가 답변이 길어지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다 넣은 타 시·도는 그럼 국가직은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글쎄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 군데 예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 간사 진옥경

몇 군데입니까? 총 여기에.....

● 총무과장 이상기

거의 다 그렇게 됐는데

● 간사 진옥경

거의 다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예.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대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놓는다고 하면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만원을 줄 수도 있고 3만원을 줄 수도 있고 4만원을 줄 수도 있고 의회에서 딱 규정한 대로 조례로 정해 놓으면 3만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이걸 교육감이 자율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예산과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어차피 예산에 또 올라가

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또 이  
중으로 이렇게 번거로운 것이죠.

그래서 당직조례로 정했을 때는 국가와  
지방 그 다음에 금액을 다 명시할 수 있  
고 행정예이중 삼중으로 또 다시 매년  
그것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고심을 많이 해서 복무조례로 개정  
했을 때는 어떤 법리상이 맞지 않는가 또  
그 다음에 조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다  
파악을 해볼 때 조례로 정하는 것이 법리  
상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  
들이 금회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 간사 진옥경

그러면 지금 올라온 안처럼 당직수당으  
로 되어 있는데는 어디 어디이고 그 다음  
에 복무조례로 되어 있는데는 어디 어디  
입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지금 15개 시·도가 거의 복무조례를  
개정을 해서 당직 및 비상근무라고 해 가  
지고 거기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거의 이렇게 명  
기를 했습니다.

● 간사 진옥경

그러니까 충청북도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총무과장 이상기

충청북도교육청만 저희들도 이것을 조  
례로 올린 것이죠.

● 간사 진옥경

그러면 이거는 의회에 대한 도전이 아  
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글쎄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 안하고 우  
리가 집행청에서 어느 것이 더 법리에 맞  
고 합당한가를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  
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도 지방공무원과 국가공  
무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청에서  
도 저희들과 같은 당직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1월부터.....

● 간사 진옥경

도청이 그러합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예.

● 간사 진옥경

저는 이것이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무  
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것이 큰 문제  
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당시에도 이것에  
대한 월가 월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  
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형태로 다시 도청  
은 어떤 형태의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  
습니다마는 그것이 부결되고 다시 똑같은  
것이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이 똑같은 안이 다시 부결된 것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매우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런 교육위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이 안을 올리신 것입니까? 저는 회의록을 읽으면서 그사이에 제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부결했다 하면서 또 다시 논의를 한 일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집행청만이 이것을 논의해 가지고 여기에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좋습니까? 저는 3만원 올리는 것에 대해선 너무나 현실적인 필요성이 지금 있는 부분인데, 단지 시·도교육청 당직수당조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서 이것을 해야되는지가 마치 집행청과 의회 간에 힘 겨루기나 혹은 이런 양상으로 치달는 것에 대해서 원인제공을 자꾸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웅

회의진행 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의 작성상 관등성명과 질의하실 때도 어떤 분이 질의하시는지 꼭 말씀하시고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 위원장 성영웅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수 위원

이과장님 전에는 이 조례가 올라올 당시는 교육위원회 국장이었고 지금 총무과장으로 오셨는데, 애초에 우리가 보류시켰을 때 조례내용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같습니다.

● 이기수 위원

똑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조례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달랑 당직에 대한 조례 돈 3만원 요것만 가지고 한 게 조례로 되어 갖고 올라왔는데, 우리가 부결할 당시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는 똑같은 조례안인데 교육부에서 공문 한 장 더 날라 온 것.....

● 간사 진옥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5월에 먼저하고 저희가 8월에 심의를 했죠. 그래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 이기수 위원

공문도 그전에 내려온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된다면 그럼 과거 몇 개월 전에는 똑같은 안건인데 그때는 부결시켰고

지금은 똑같은 조례내용인데 가결했다 하면, 먼저 조례는 교육위원회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걸 부결했다가 다시 검토하고 보니까 당연하게끔 해줘야 할 문제로 우리가 부결시켜고서 다시 가결한다는 그게 내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복무조례 속에다가 개정을 해서 넣은 다른 시·도 마냥 넣어 놓고 거기에 상응할 정도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또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서 이게 교육위원들이 애초에 부결 시에 제시했던 그런 사항을 충족시켜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 사실 이걸 지금 그대로 올려놓고서 다시 가결해 준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들어가는 이런 조례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례가 참 한번 조례가 제정됐다든지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사항을 담을 수가 있어야지 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거 한 장으로 딱 돈 3만원 지급해야 된다는 그걸로 한 개 조례를 만들어 갖고 여러 가지 조례가 지금까지도 많은데, 사실 조례도 정비해야 될 건 정비하고 폐기해야 될 건 폐기하고 보완해야 될 건 보완하고 이렇게 돼 갖고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해 갖고서 우리가 개정한다든지 유지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자체도 조금 괴로

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성명용

끝나셨습니까? 대답을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성명용

예.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저희들 집행청에서 위원님들을 반항한다든지 이런 뜻에서 사실 이걸 다시 그냥 그대로 올린 건 아닙니다.

다만 8월 달에 심의할 적에는 타 시·도교육청에서 한 군데인가 밖에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하고는 지금은 이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우리만 빼고 유일하게 다 했고, 그때 당시에는 한 개 시·도교육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당인상에 관한 조례라든지 복무조례에 넣든 간에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렇게 여건이 다 변동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인상관련해서 조례를 정하려고 이렇게 해서 관련법을 전공하신 분들한테 상의를 하니까 복무조례보다는 그래도 수당지급 조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가 다 복무조례로 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수당지급조례가 맞다고 그러니까 또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도청에서도 수당지급조례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럼 수당지급조례로 하자 해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이해 주시고 대단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성명용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위원입니다.

지금 당직수당을 조례로 만들든지 안만들든지 아니면 복무조례로 개정해서 주던지 어쨌든 지급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현재 그 말씀하기 전에 당직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저희들이 추세가 당직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캡스나 용역단체에 의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능

직에 대한 업무경감차원과 그런 뜻에서 많이 개선되어서, 현재는 당직하고 있는 기관이 우리 도청교육청 또 11개 지역교육청 또 5개 직속기관 그 다음에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사립학교가 6개가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용역회사에서 하고 또 용역회사에서 숙직전담자가 나와서 하는 그런 현황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 당직조례를 통과시켜줘서 3만원으로 해줄 경우에 현행 만원에서 2만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전체는 한 1억 7,000 분청과 지역교육청 그 다음에 직속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 1억 7,000정도만 금년 안에 더 소요가 되고, 학교는 현재 예산이 총괄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은 없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리고 지금 복무조례로 개정해서 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 타 시·도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만약에 복무조례로 해서는 금액이 명시가 안되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당직비지급수당조례로 정하면

거기에 금액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교육감이 마음대로 당직비를 증가하거나 감액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하여튼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꼭 3만원으로 맞추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각 도가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만원으로 하는 거지 조례로 안하고 복무조례로 하면 교육감이 그때 그때에 따라서 타 시·도보다도 더 올려줄 수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김남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이상일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저는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추가로 소요되는 일·속직비가 1억 7,000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

는 더 소요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예산을 하기 때문에 소요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맞습니다.

● 김남훈 위원

그렇다면 일·속직비 2만원 추가 금액을 미리 지급할 걸로 보고서 예산에 편성해서 다 나갔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왕에 경비업체에 나갈 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일·속직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한테 나가는 거니까 그 돈이 비슷합니다.

지금 경비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월 1,300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일직, 속직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이렇게 계산하면 한 1,280만원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이 더 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김남훈 위원

글쎄 답변에 저는 수궁할 수가 없네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학교별로다가 규모가 큰 학교라든지 적은 학교라든지 시 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데서

여건이 다 틀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숙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용역을 주었다고 하지만 만약에 실질적으로 3만원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또는 학교 일 반직들이 실제로 하는 학교가 있을 거라 구요.

그렇다면 금년에 본청, 직속기관, 지역 교육청만 하고 나머지 일선학교는 지금 현재 계약상태를 가지고서 1년을 끝어나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에 변경을 못하고 1년을 그대로 계속해서 2005년도는 지금 현행대로 집행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비업체하고 1년단 위 계약을 했으면 그 경비업체가 또 야간 경비를 하면서 또 학교에서 숙직은 할 수 는 없겠죠. 결국은 한쪽이 끝나야 한쪽 시작할 거니까 결국은 예산은 비슷비슷하 다 그런 뜻입니다.

● 김남훈 위원

교육위원 김남훈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만원 이상의 당직비를 소요하게 되는 거네. 이 상의 그렇죠. 만원 가지고 운영을 못하 죠. 한 달에 그러니까 30만원 가지고서 용역을 체결 못할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 김남훈 위원

그렇다면 그 초과되는 예산을 예측하고 서 미리 학교에 배부했다 그런 얘기입니 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야 간당직비를 경비를 하는데 연간 경비업체 에다가 주는 돈이 한 1,300만원정도 됩니 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경비업체가 하지 않고 직원들이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한 연간 1,28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추가로다가 돈 전체 덩어리로 봐서는 드 는 돈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재택당직을 하고 있는데서 아 이제 재택당직을 안하 고 일·숙직하겠단든지 그러면 그거는 추 가로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로써는 추가로 드는 거는 우리 일선 지역교육청하고 우리 본청하고 산하기관만 해당된다 그런 뜻입니다.

● 김남훈 위원

총무과장님 일선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예산이 일·숙직비로 얼마정도 책정해서 나갑니 까? 1년에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제가 예산문제는 아직 파악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 **김남훈 위원**

만원 기준해서 나가죠. 지금 현재

● **총무과장 이상기**

총괄예산에서

● **김남훈 위원**

아니 총괄 말고 총괄예산 속에 예산이 들어가되 지금 현재 기준은 1일 만원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편성지침에 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 **김남훈 위원**

만원 맞죠.

그런데 관리국장님께서 1,200정도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년 365만원하고 일직하고 해서 500만원 안쪽인데 1년에 당직 예산편성액이 나머지 6·700만원은 어디서 보충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운영비에서 보충하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면 학교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아까 방금 관리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

듯이 현재 금년에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용역업체가 다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계약이 되어 있고 아까 제가 1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속직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인상이 될 때 2만원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것이 1억 7,000이고, 금년에 우리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속직을 안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그것이 지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년에 가서 2006년에 가서 우리가 다시 예산편성 기준을 책정할 때 그때 다시 그것은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남훈 위원**

알았습니다.

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지금 교육위원님들하고 집행청하고 서로 수당지급에 대한 것을 서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간편하고 몇 줄 안되는 내용이고 또 수당에 관한 얘기만 규정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지역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에 있는 분들 일·속직에 관한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지 일

선학교 같은 경우에 일직을 한다 또는 사립학교에 일직을 하는 선생님이라든지 그럴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갖고 준용할 수는 있지만 이 조례안에 그걸 담고 있지 못하거든요. 아주 극히 일부적인 부분이 포함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수당에 대한 지급이 일·숙직이 당직비에 대한 수당만 있습니까? 그 외 여타 여러 개의 수당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봉급에 해당되는 수당말고서도 그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수당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보수와 관련해서 보수규정에 의해서 수당 그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각종 위원수당이 시험수당 같은 것 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서 참석하고선 거기에 지급 받는 공무원이 아닌 타 사람이 받는 수당, 우리 공무원은 안받죠.

그 다음에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선 지급하는 수당 그것도 보통 공무원은 거의 지급이 안되고 외부강사 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럼 각종 수당이라는 것이 위원회면 위원회의 조례안에 그 수당을 얼마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전부 못 박아져 있죠. 그

렇죠.

만약 전체 수당에 대한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고 그 안에 이게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들어감과 동시에 일선학교나 그 외 사립학교 같은 경우라든지에 대한 일·숙직에 대한 수당지급은 여기에 준용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해 갖고서 그분들까지 전부 내포하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만이 일관성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일반적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주 특정한 수당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비규정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직비도 거기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넣는 것보다는 이게 별도로 정하는 게 낫다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여비규정에다 넣어서는 할 수는 전혀 성질이 틀린 거기 때문에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도 그렇게 포괄적인 제 수당을 하는 데다 넣을 수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

에 지금 요것만 별도로 떼어 가지고 정하는 것입니다.

● 이기수 위원

어떻습니까? 중·고등학교 일선학교에서 당직을 안하다가 어느 사정에 의해서 당직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 조례를 그냥 따라갈 수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사립학교가 당직하는 데가 일직하는 데가 있어요. 알아 보시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그럼 그 학교 나름대로 자기들이 알아 갖고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줄 것인지 이런 조례에서도 준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도 포함시킨다든지 하게 될 것 같으면 당직비를 지급하는 대상이 더 확대되어 갖고 폭이 넓어지는 얘기인데, 그분들을 얘기한다면 여기 따를 수도 있고 안따를 수도 있고 하든지 하게 될 것 같으면 너무 이 건 폭을 줄여 놓은 조례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여기 적용범위에 보면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하니까 국가공무원이든 지방직공무원이든 교육공무원이든 일괄적으로 공무원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립학교 직원은 여기 우리 공무원의 제 규정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연히 저희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이기수 위원

예.

● 위원장 성영용

송대헌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한 7,8년 전에 그때 우리 관리국장님 교육부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대대적인 조례정비를 한번 했어요.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폐지할 건 폐지하고 축소할 건 축소하고 통합할 건 통합했던 것이 한 7년 될 겁니다. 대대적인 조례정비를 했습니다.

조례에서 규칙으로 내릴 것 이런 정비를 해서 그때 너무 방만하게 조례제정이 됐다 해서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육부주관에 의해서 했습니다. 한 지 한 7,8년 지나 지금은 아까 이기수 위



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조문 달랑 4개 인 걸 가지고 다시 또 제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직지급조례라고 하는 돈 3만원 주겠다고 하는 조례를 다시 또 4조로 되어 있는 걸 생산을 자꾸 해나가는 겁니다.

그 밑에 자치집, 법규집에 보면 그 밑에 당직규정은 있습니다. 당직규정은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는데 이게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포괄적으로 당직조례가 있다고 하면 당직에 관한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난에 들어가서 당직수당은 3만원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조례가 아니고 그 하부인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규칙으로.

그러면 일맥이 통하고 되는데 당직규칙은 전체적인 당직에 관한 것은 규칙적으로 되어 있고 달랑 3만원 준다고 하는 건 빼 가지고 조례로다가 상위에다가 제정하는 법체적인 모순이 하나 제기하고 싶고, 또 자꾸 조례를 언젠가는 자꾸 축소하고 폐지, 통합하고 있다가 지금 4조 되는 걸 생산하는 문제 이런 법리적인 체제에 대한 문제를 하나 제의하고 싶고,

두 번째, 15개 시·도가 다 먼저 번에 우리 위원들이 제의했던 것처럼 복무조례 속에 해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자문을 들어보니까 국가공무

원하고 지방공무원이 혼합되어 있어서 법이론의 체계가 이게 더 맞다고 더 타당하다는 얘기를 아까 총무과장이 했는데, 타시·도도 이게 타당하지 않아도 크게 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복무규정에 넣어서 그걸 시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위반되는 것을 타시·도가 어겨가면서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을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한번 부결되었고 우리들이 권고한 바와 같이 타시·도와 같이 복무규정을 개정해서 위법이라면 안되죠. 법리론이 이게 낫다고 강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타시·도는 다 위법하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3만원 아니라 4만원이라도 그때 형편에 또 앞으로 4만원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점은 오히려 복무규정으로 넣어놓으면 더 좋습니다. 융통성에 있어서 이렇게 이 조례를 매듭지어야지 똑같은 문안을 지난해 8월에 했던 것을 다시 내놓고 여기 있는 사람도 하나 안바뀌었습니다. 다시 심의해서 해 주십시오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법리체제의 모순뿐만 아니라 지나온 과정을 비추어 보거나 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는데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부에 계셨으면 통합관계 아실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에 법을 정비한 적이 있고 물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항상 보편은 법이란 것이 실질적으로 보편은 생산만 하지 소멸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일제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소멸시킬 법들을 소멸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년 전에 한 7년 채 못 됐을 겁니다. 그때 일제히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경우라든지 법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이 폐지를 시켰고 또 조례도 아마 상당 부분 많이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선은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법을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생산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조례 자체도 생산하고 있다가 얼마간에 가서 다시 제 수당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아니면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겨 가지고 하다보면 일괄적으로 모든 제 수당에 대한 규정, 법령을 정비를 할 수도 또 있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 만든 4개의 조문의 조례 하나가 이게 평생가고 할 조례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물론 타 시·도가 복무조례로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충청북도는 양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별개로 독립된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 그러나 양 자치단체가 아무 것도 아닌 일 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 한 쪽은 복무조례 쪽 한 쪽은 이런 쪽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또 복무조례가 극히 타당하고 이것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는데 법리적으로 따질 적에는 이게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올린 것이지 위원님들 전혀 다른 뜻이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지금 거의 한 50분 동안 아주 간단한 4개 조항에 대한 당직수당조례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은 질의하고 집행청에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만큼 알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잠깐 휴회해서 위원들끼리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서 다시 속개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한데.....

● 위원장 성영용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휴식하면서 또 다음 안건

도 있으니까 나중에 다 같이 정회를 해서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질의 및 답변만 해 주시고 거기에 충분한 답이 되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 **간사 진옥경**

궁금한 부분들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진옥경**

진옥경 위원입니다.

재택당직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 방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재택당직은 학교 내에 있는 숙직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자기 인근에 자기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밤중에는 퇴근하고 나서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전화기가 자기 집에 연결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해서 집에서 글자 그대로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당직수당은 지급이 안됩니다.

그걸 재택당직이라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근무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택당직을 지금까지 권장을 해와서 거의 지금 모든 학교가 재택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같은 데는 먼 단위가하는 학교 주변에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간사 진옥경**

그러니까 주로 당직이라는 목적이 화재나 도난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화로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것이 방지가 됩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캡스 용역회사에 설치해 놓고 사람만 근무 안하고 집에서 하면서 비상시에 바로 출동이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 **간사 진옥경**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직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 경우들이 어떤 경우입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국가 공무원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일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학교의 여선생님

[제176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전에는 거의 100%가 일직은 여 선생님들이 많이 했고 숙직은 남자선생님들이 하고 또 같이 기능직과 둘이서 이렇게 숙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업무경감 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용역회사에다 많이 의뢰를 하고 숙직하는 그 관계는 많이 감소가 됐죠.

● 간사 진옥경

그래서 지금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저도 잘 모르니까 일반교사가 당직을 하는 경우가 지금 국가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지방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 당직을 담당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숙직하고 있는 교가 6개 학교거든요.

● 간사 진옥경

사립 그건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공무원이 아니죠.

● 총무과장 이상기

그래도 저희들이 여기 당직에 관해서는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이 되죠.

● 간사 진옥경

제가 그래서 지금 만약에 거의 국가공

무원인 교사가 당직을 하는 경우가 없다면 복무규정에 넣는 것이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청에서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실제 현황 그리고 그것의 타시·도의 규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현재 국가직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이 도교육청도 있고 전문직

● 간사 진옥경

그러면 몇 급 이상 이렇게 해당됩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아니 저희들 교육청 같으면 50세 이하 전문직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그 다음에 직속기관 거기는 지방공무원하고 국가직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직하고 그래서 다 적용이 되죠.

● 간사 진옥경

그럼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당직을 하든지 일직을 하든지 하면 선생님들이든지 일반직 직원이든지 모든 사

랍들이 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될 것 아닙니까? 자기 집을 지키는 건데 선생님이 라고 해서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다만 선생님들은 그래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업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업무경감 차원에서 선생님들은 좀 제외시키자는 뜻에서 거의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선생님들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반직만 하니까 그렇지 않냐, 이 지역교육청이라든지 사업소 같은 데는 또 전문직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 간사 진옥경

그러니까 제가 그런 각 지역교육청별로 몇 분이 해당되고 그러니까 어떤 대다수가 지방직이고 국가직 공무원들은 그 숫자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부라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넣는 것이 맞고,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반반정도가 된다는지 아니면 교사들도 많은 숫자가 당직을 하고 있다거나 할 예정이라면 지금 현행 집행청에서 올라온 새로운 어떤 수당조례를 만드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실 수 있는 자료 있으시면 제시해 보십시오.

####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사실 지금 반반 많으면 거기다 넣고 적으면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럴 수가 없고요. 한 명이 있더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그러면 당직을 안시킬 수 없으니까 당직하도록 해 놓고서는 똑같이 수당을 주다보면은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숫자하고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그런 자료들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간사 진옥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개의 안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이나 혹은 의회의 어떤 집행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온당하냐에 대한 판단의 어떤 근거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납득을 하고 또 정히 안되는 부분은 다시 부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 위에 이런 것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저희들이 설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 도청에서도 대개 당직사령이 국가 공무원이 되는데 고위직이 거기서도 사실상은 국가직이 미미합니다. 도청 같은데도 당직사령은 간부직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 거의 지방공무원이 되고 그런 현실하고 우리는 그거에 비한다면 숫자가 월등히 많죠. 월등히 많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3만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예측을 해서 또 선생님들이 일직정도는 또 근무를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런 건 그렇고 현재로써도 우리가 행정기관인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서 우리가 전문직과 일반직이 혼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적용시킨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당직비지급조례로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타 시·도에서 복무조례로 정했으니까 저희들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심도 해봤고 또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도 편하고 여러 가지가 좋겠습니다. 마는 그러나 이왕 우리가 제정할 바에는 법리에 합당하고 또 다 같이 맞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고심 끝에 이렇게 우리가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시지 마시

고 다 같이 좋은 방법으로 해서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간사 진옥경**

제가 당직수당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든지 어떤 식으로 되면 일직수당은 거기에 준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직수당조례를 다시 만드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당직이라고 하면 낮에 하는 일직이 있고 밤에 야간에 하는 숙직이 있습니다. 그걸 합해서 당직이라 합니다.

● **간사 진옥경**

그러면 낮에 선생님들이 일직을 여선생님이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들이 거기에 또 일선학교에서도 직접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선생님들이 하게 되면 다 같이 적용이 돼야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죠.

● **간사 진옥경**

그러면 일직 같은 경우도 재택일직 같은 것들은 하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금 현재 일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당직비를 만원 할 때하고 3만원 할 때하고 하면 학교에 따라서는 기왕에 예를 들면 단양 같은 벽지에 가 계신 분들

이 집에도 안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앞으로는 그럼 일직과 당직을 하자라고 했을 적에는 할 수가 있다 얘기합니다.

지금은 만원씩밖에 안되니까 그 만원 갖고는 현실적으로 아주 부족한 액수니까 다들 경비업체로 돌린다든지 뭐 이렇게 재택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죠.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 **간사 진옥경**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대충 개략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잠시 얘기도 있었습니다. 마는 당직비 3만원 올리는데는 다 이견이 없습니다. 단, 작년도 8월 달에 우리 169회 회의 때 거론됐던 복무조례 중에 삽입되는 부분을 이번에 수당지급조례안으로 하면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당위성과 명분 또 업무수행의 용이점 여러 가지 자료를 해당과에서 제출하셨으면 오늘 이런 오랜 시간도 안하고 쉽게될 수 있는데, 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똑같은 안을 글자 하나 안틀리고 안이 다시 상정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 미리 이런 미흡한 부분 왜 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밝혀서 일의 조례라든지 어떤 뭐를 결정하든 쉽게 용이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5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5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 **위원장 성영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성영웅**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제176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학교회계제도의 시행 및 관련법규의 개정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 개정내용은 학교회계제도의 시행에 따라 학교회계 소관물품을 동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있어 서무주무자의 명칭을 행정주무자로 하고 중요물품의 범위를 단가 50만원 이상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으로 하였으며 불용물품을 소요조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훈 위원

교육위원 김남훈입니다.

저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안이 왜 지금서 이것이 조례개정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어요.

이 행정실이라고 표기한 사용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99년

● 김남훈 위원

'99년, 그러면 한 5년 됐네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그렇습니다.

● 김남훈 위원

조례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구 조례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91년입니다.

● 김남훈 위원

'99년도에 행정실이라는 용어를 썼고 '91년도에 서무실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무시하고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행정실이니 뭐니 이렇게 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행정실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구 조례를 변경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명칭이 바뀌어야 될텐데, 구 조례는 그대로 살아있고 이걸 전혀 무시해 버리고서 행정실이라고 지금



각종 수첩이나 무슨 유인물에 전부 행정실로 나오고 행정실장, 행정부장으로 나오는데 그럼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 그러한 개념으로 다가 조례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이 타당성이 맞는지 그거에 답변해 주세요.

잘못된 거죠. 행정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이 조례를 먼저 바꾼 다음에 수정한 다음에 변경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임의로다가 이제까지 한 5년간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97년도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서 서무라는 단어가 빠지고 행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침으로다가 그렇게 내려왔죠.

● 김남훈 위원

그런데 조례는 뭐 하는 겁니까? 조례는 뭐 하러 만들어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반드시 수정되어야 되는데 고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아니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지금 같은 체제토다가 구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법이 바뀌면 그에 따른 관련된 사항들이 조례라든지 거기 법에 근거를 해서 모든 것을 다 서무직원을 행정직원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다만, 지금 그런 조례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히 조례를 정비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번에 서무주무자를 행정주무자로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지금 개정을 하려다 보니까 기왕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포함해서 정비를 하자 하는 뜻에서 낸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 전에 법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남훈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단 이 조례개정에 앞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제가 여기서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전에도 한 두 번 나왔었어요. 그때는 이러한 제발 행위가 절대 없겠습니다하고서 답변해 놓고서 이것이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제발 되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올바른 체제를 갖추어 놓으신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

[제176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원은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 거기 보면 11조에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갖다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이한 점을 설명해 주세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정한물품의 중요물품은 단가 200만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변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중요물품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두는 것입니다.

● 김남훈 위원

그러니까 단가 50만원 금액을 갖다가 물품으로다가 변경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걸 50만원으로 했다가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종전에 50만원 자리 주요 기기가 지금 와서는 20만원 상당에 이렇게 해당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마다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매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하는 김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성영용

답변이 됐습니까?

● 김남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용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게 중요물품이라고 하든지 하면 구매할 때도 중요물품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둔다든지 꼭 입찰을 봐야된다든지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그렇게 되면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물품이다 거기서 가액으로 얘기를 항시하고 있는 겁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품종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그 품종을 교육부에서 항시 조건표를 확인을 해 갖고서 이것은 중요물품이다, 아니다 열람을 해 갖고서 하느니 보다는, 그게 가액을 정해 준다든지 하면 보통사람들이라도 교육부에서 만약에 200만원을 냈다 이렇게 된다든지 하면 200만원을 명시해 줘 갖고서 물품을 관리하는 직원이나 여타 다른 분들이 야 이거는 가

액이 얼마니까 단일하게 떨어져 갖고 가격이 나온 애기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애기인데 이걸 교육부에서 정하는 물품이다 이렇게 해 놓는다면 이게 상당히 그걸 일일이 조건표를 확인해 가면서 그걸 해야지 된다면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거에 대한.....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현재 같은 경우는 10개 품목 이렇게 정해 있는데 그 10개 품목을 말씀드리면 전기, 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운반, 건설, 기계, 차량 그리고 기계요소, 공작기계 등 10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수관리하고 수급관리계획서 작성할 때 그 품종에 한해서 2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중요물품으로 정해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10개 품목이라도 구체적으로 한 개만 전기다 하면 전기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물품수급관리계획서 작성할 때 그런 지침서가 나옵니다. 해마다 한번씩하고 있

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 이기수 위원

네.

● 위원장 성영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조문에 신규대조대비표에서 조금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제8조에 물품매입 등에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관과장 괄호 열고 주관과장이 없는 청·소는 서무주무자 이 서무주무자를 행정주무자로 이렇게 바꾼다는 표시 갖고 구조도 그렇습니다. 주관과장 물품매입요구의 심사에서 주관과장 괄호 열고 주관과장이 없는 청·소는 서무주무자를 행정주무자로 개정안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받아서 해석한 것은 서무주무자를 행정실이 생겼기 때문에 행정주무자로 바꾸는 것이라고 이렇게 간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들어보니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정주무자라는 건 행정실에 있는 6급이라든가 뭐 5급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주무자 그걸 뜻하는 게 아니고 과학부라든가 분임출납원을 의미하는 거라 이거예요. 분임출납원 그렇게 잠깐 쉬는 동안에 담당 주무과장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분임출납원이라고 하는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관과장이 없는 청·소는 분임출납원 이렇게 하면 보다 뜻이 명확해지는데 행정주무자 해 놓으니까 행정에는 교육행정도 있고 일반행정도 있고 저처럼 우둔하게 행정실에 있는 주무자라고 해석도 할 수 있고 개념이 혼동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좀 명확한 뜻이 됩니까?

여기 서무주무자를 행정주무자로 바꾼 그 행정주무자가 지금대로 과거에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분임출납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서무주무자를 서무를 행정으로 이름만 바꾸어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용어가 정의가 되어서 행정주무자란 이리이러한 것이 있다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개정조례안 8조, 9조에 서무주무자의 의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서의 행정업무책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서의 행정업무책임자는 누구나

다 달수가 있죠. 꼭 행정실의 행정실장이라든지 주무자는 거기 보면은 출납원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업무책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현재는 서무라는 용어보다는 행정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서무직원을 갖다가 행정직원이라고 했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그냥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송대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인이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서무의 주무자가 아니고 교무행정이든지 뭐든지 과거의 분임출납원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보다 개념을 분명하기 위해서 분임출납 행정주무자라는 표현보다는 분임출납원이라고 아주 명시를 하는 것이 혼동도 방지하고 개념이 명확하지 않겠는가, 뭐 교감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과학 같으면 과학부장도 될 수 있고 또 서무의 경리책임자도 될 수 있고 한 학교에 여러 사람이 주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그렇다면 보다 명료하게 분임출납원이라는 용어를 대신 쓰는 것이 나은 개념이 명료해진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물론 분임출납 공무원이라든지 분임출납원 이렇게 하면 더 뜻이 명료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국한하다 보면 또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주무라는 것은 행정직명이고 그 다음에 분임출납원하면 이거는 회계직명입니다. 회계직명을 거기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주무자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 송대헌 위원

그럼 과거에 서무주무자라고 했던 부분에서는 지금 행정주무자로 바뀌면서 개념이 완전의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서무주무자라는 과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정실에 있는 6급이라든가 5급 공무원을 지칭했었고, 그것이 이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물품구입이나 책임의 요구에 관한 책임이 행정주무라고 하는 바뀌지는 조례안이죠. 내용이 어떻습니까? 과거하고 같은 겁니까? 달라지는 겁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행정업무의 책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물론 사무실에 있는 서무책임자를 꼭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 송대헌 위원

그러니까 개념이 행정주무자라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명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조례란 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교장이 그러면 행정주무자를 다 임명합니까? 너는 무엇에 대한 행정주무자다, 박선생은 무엇에 대한 행정주무자다 임명합니까? 행정주무자라는 용어개념이 안서서 지금 자꾸 이렇게 논의를 제가하는 겁니다. 행정주무자라고 하는 개념의 정의가 분명치 않다 이거예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행정주무자라고 하는 것은 8조, 9조에 나와 있는 업무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썽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더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하지 않느냐

● 송대헌 위원

지금 타 시·도비교표를 보면 충북은 주관과장하고 괄호를 넣었는데 서울, 경기, 강원, 울산, 경남, 대구, 대전, 경북, 인천, 부산, 전북, 광주 12개는 주관과장은 괄호 열고 주무과장 없는 청·소는 서무주무자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이렇게 바꿨습니다. 타 시·도는 그런데 충북만은 유

일하게 그걸 살려서 서무주무자를 행정주무자로 바꾸는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성격을 분명히 알고 심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성격의 규명을 달리 생각했었는데 명확하게 우리가 알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도는 그 부분을 삭제했거든요. 왜 삭제했는지 완전히 삭제해 버렸어요. 그리고 전남 하나는 이렇습니다. 주관과장 괄호하고 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또 전남은 주관과장 밑에 괄호 열고 교감을 포함한다는 얘기를 썼고 충남하고 제주는 당해 부서에서는 물품출납원 괄호하고 분임출납원이라고 제가 요구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분임출납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주무자라는 개념정을 확실하게 했는데, 유독 우리는 지금 저처럼 개념이 혼동되듯이 행정주무자라고 하니까 교장이 행정주무자를 지정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타 시·도는 아주 그걸 없애 버렸어요. 현행 조문에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물론 타 시·도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타 시·도에 되어 있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학교 단위에는 과라는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 송대헌 위원

그러니까 학교 단위의 행정주무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교장이 지명하느냐 아니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임출납원 하면 분명히 정해집니다.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분임출납원 그러니까 행정주무자 교무행정의 주무자가 누구냐 어떤 데는 교감을 포함한다는 표시도 했는데 누구를 지칭하느냐 이거예요. 좀 개념을 명확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물론 이거는 학교장 선생님이 지정하시는 분이 되겠죠.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장님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

● 송대헌 위원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까? 분임출납원으로 지정하는 거 아니예요? 분임 명칭이 되어야 지정하죠. 부장들이 되는데 꼭 부장이 하는 건 아닌데.....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러니까 부장님이 꼭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 업무를 지정을 하게 되면 어느 부장님이 하던.....

● 송대헌 위원

학교에서 지정하고 있는 것은 분임출납원만 지정을 해 줘요. 과학물품의 분임출납원, 물품분임출납원 그건 지정하지만 행정주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교무행정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우리가 조례만 덩석 해놓고 행정주무자가 누구나 할 적에 지정한다고 하는 것도 지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일선 학교 교장한테 행정주무자를 지정한다 이것도 없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물론 행정주무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업무를 맡으신 분이 행정책임자가 되는 것이죠.

● 송대헌 위원

좀 막연한데요. 업무를 맡는다면 업무라는 게 한 두 가지입니까? 물품구입현황 업무를 얘기하는데 분임출납원이 해요. 분임출납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행정주무자라는 용어를 또 쓸 게 뭐 있느냐 말이에요.

타 시·도 마냥 분임출납원이라고 괄호하고 명시를 해 넣든지 그러면 아주 명확한데 거기다가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서 행정실의 주무자인지 혼동을 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자세한 건 담당사무관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 경리담당 김영구

경리담당 사무관 김영구입니다.

여기서 행정책임자라는 어떠한 애기는 어떠한 직위를 애기를 한다는 거보다도 그 해당 각 부서에서 물품관리업무를 취급하는 주무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충남, 제주에서 얘기하는 괄호 열고 분임물품출납원은 이것은 지금 송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협의를 거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각 부서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은 이견 아닌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여기서 괄호 열고 주관과장이 없는 청·소는 서무주무자를 행정주무자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각 부 교무부나 연구부나 이런 걸 의미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각 부에도 각 부장을 전부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임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분임물품출납원을 임명하지 않는 부서도 있고 해 가지고 그걸 분임물품출납원을 거기다 딱 명칭을 넣기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송대헌 위원

좋아요. 수고했어요.

분임출납원이라는 것은 그래도 지정하고 지시를 분임출납을 지정하라고 행정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주무자를 지정하라고 하는 것은 지시도 안갔을 뿐만 아니라 용어개념도 정의가 안됐다 이거예요.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핵심을 잘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런 조례를 올릴 때는 개념이 명확한 부분으로 해야지 그냥 교무부나 무슨 부가 있으니까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부장이 될 것 같다, 때로는 부장이 물품을 취급 안하고 그 밑에 계원을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부의 계원이 물품을 출납하는 것을 정리하고 대장도 하고 구입도 하고 구입 결의서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검수도 하고 꼭 부장이 하는 것도 아니예요.

지금 아까 막연하게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은 교무부나 연구부나 하는데 행정의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이 행정주무자입니다.

그러면 교장이 당신이 행정부장이지 행정주무자 물품을 구입하는 행정주무자는 아니거든요. 부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예요.

그러면 행정지시로다가 교육감이 각 학교에 있는 행정주무자를 지정해서 이런 물품에 될 해라 이런 것이 나간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만든다고 할 적에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지 그냥 막연히 행정주무자로 한다 혼동이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성영용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기수 위원

지금 송대헌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은 조례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해야지 될텐데, 지금 국장님이나 집행청이 설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는데 이거 안보고 설명 안들은 분도 떨어지게끔 되는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건 물품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책임을 가진 분임출납원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딱해 준다든지 하면 누구나 오해 없이 그냥 받아들일텐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교육위원들이 이게 뭔가 또 어떤 막연한 용어 이거보다는 뭔가 분명하게끔 조례에서 못 박아주는 것도 괜찮은 얘기 같아서 저는 송대헌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렇게 분명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 위원장 성영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진옥경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모호함에 따라서 갈등이 업무의 어떤 뭐랄까 분장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 혼동이 생길 여지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주관과장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교감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전남 같은 경우는 교감을 주관과장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주체가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지금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각 무슨 부장이라고 이야기하시다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교감이라는 것은 어디에 주관과장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여기 8조에 보면 물품매입 등의 요구입니다.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서 요구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 요구는 구성원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이 업무, 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저 업무 그 요구자는 모든 사람이 되는데 거기서 과장을 거쳐서 하는 거니까 과장 또는

교감 또는 어떤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 요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 주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 간사 진옥경

교감은 어떤 특정한 업무를 담당합니까? 각 부서 같은 경우는 그게 과학인지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교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서로 부장과 교감 사이에 어떤 경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요?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물론 주관과장이 있는데는 주관과장이 출납원을 거쳐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관과장이 없는 데가 문제입니다.

그 없는데는 교감이 할 수도 있고 부장이 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걸 통칭해서 그냥 종전에는 서무주무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무라는 용어가 사실은 지금 이걸 고치지 않았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의제기 같은 걸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거에 서무라는 용어가 행정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으니까 행정주무자로 바뀌는 것 그것뿐입니다.

● 간사 진옥경

단지 용어만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 간사 진옥경

그래서 이제까지 어떠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 간사 진옥경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죠.

주관과장이라면 도교육청이나 국이 있는 청주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 위원장 성영용

그렇게 하고 일반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앞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그 물품에 한해서 매입할 때는 해당 부서를 들어서 과학부는 과학부, 연구부는 연구부 해서 어떤 필요한 연구자재라든지 과학자재를 살 때 해당되는 부분은 그 주무부에서 신청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맞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그러면 지금 아까 송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냥 행정주무자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행정하면 행정실이라는 개념이 많으니까 혼동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인데 실제 하는 학교장이나 일선교육청에서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해가 가능한 범위 내에 쉽게 명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송대헌 위원님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송대헌 위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주무자 그러면 행정실을 보통 생각하지 일반 그거를 생각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까지 서무주차로 해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마는 조례라든지 이 필요성이 뭐니까 시행하는데 어떤 착오없이 잘 하도록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간사 진옥경

신설조항이 지금 16조제4항인데요. 불용품의 소요조항에 관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불용품에 대한 어떤 파

악이 일단 있어야지 가능할 텐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해마다 합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탑재를 할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이것은 불용품이 발생한 기관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간사 진옥경

수시로 합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예.

● 간사 진옥경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누가 불용품을 요구하게 됩니까?

만약에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재활용을 할 경우에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불용품을 소유한 학교,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 간사 진옥경

그 기관 자체 내에서 하게 됩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그걸 하는데 신청은 1,000만원 이상은 도교육청 및 조달청 그리고 1,000만원 미만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게 됩니다.

● 간사 진옥경

이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들이 내구 사용연한이 지나 가지고 불용품이라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불용품이라는 것은 그 학교에서 정수를 초과해서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을 얘기합니다. 못쓰는 물품이 아니고

● 간사 진옥경

남은 잉여의 물품이라는 말씀이시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단위기관에서 정수 이상으로 소유해서 다른 기관으로 사용을 하게 해 주는 거죠.

● 간사 진옥경

그러면 새것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그렇습니다.

● 간사 진옥경

그런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라는 대목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불용품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품일

경우에는 조회를 안합니다.

● **간사 진옥경**

폐품은 상관없고 잉여의 그러니까 물건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대목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대상으로라는 요 대목이요.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충청북도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폐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고가품일 경우 사용이 불가하더라도 조금만 수선하면 사용은 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이들테면 자동차라든지 일부만 수선하면 또는 공고 같은데 큰 선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재활용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로 도로 운전으로써의 기능은 떨어지지만 그걸 갖다가 부품을 조립하는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쪽도 있죠.

● **간사 진옥경**

이것이 신설되게 된 이유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6조4항 이 제까지는 홈페이지에 그러면 탑재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됐기 때

문에 지금 신설을 하시는지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물품관리업무를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물품관리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모든 기관에서 전산에 따른 부분을 다 넣고 있습니다.

● **간사 진옥경**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가 불용품이 남았다고 할 적에는 그 시한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 줘야지 이것이 만약에 어디에서 재활용을 하겠다할 때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입년도 또는 생산년도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진옥경**

그렇습니까?

현재 남아 있는 불용품의 어떤 상태를 며칠자 현재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어야지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할 어떤 기관이나 대상이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거기에 탑재할 때는 그것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간사 진옥경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조정을 위해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 위원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69회  
임시회에서 좀더 신중히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결하였던 바 제176회 임시회에  
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한  
바, 의안이 합리적이라 사료되어 원안가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는 제8조 중 ‘행정주무자’를  
‘업무주무자’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행  
정주무자’를 ‘업무주무자’라고 한다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  
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관  
계관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  
다.

(16시 20분 산회)

[제176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진옥경,

위 원 김남훈, 송대헌, 이상일, 이기수.

0 출석공무원 : 4명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제17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5. 3. .

위 원 장

성 영 용







(별첨 1)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7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5. 2. 21. (월)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5. 2. 22. (화)  13:3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적수당 지급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